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52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의의원 : 신동윤 의원,
김이석 의원, 전순애 의원

1. 제안이유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 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제외 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신청절차 규정(안 제6조)

마.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3. 신청 및 지원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수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지원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상의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 및 서약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한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3. 지원받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주거기본법」(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주택법」(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2026. 6. 23. 타법개정, 2026. 7. 1. 시행)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 4. 14. 일부개정, 2026. 4. 14. 시행)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에 따라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 제3조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대상(소득 및 세부 자격요건의 범위), 지원규모(대출이자 지원 비율 및 한도액),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매년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단계에서는 사업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움.
- 향후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실제 주거·임차 수요 조사, 가구당 연간 지원 상한액 설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의 행정적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가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연도별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상자 수와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산정하는 등 정확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하여 본 사유서를 제출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신 동 윤 (☎ 2057)